

보험요율자유화의 본질과 대응자세



김 병 기
(동국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OECD 가입을 앞두고 금리의 자유화·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왔다. 보험상품의 가격인 보험요율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4년초부터 요율의 자유화가 시작되어 근 반세기에 가깝게 유지되어왔던 협정요율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범위요율로 이행되는 등 단계별로 요율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보험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요율제도의 변경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종래까지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상품에는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회사간에 가격경쟁이 배제되어 왔으나 앞으로

도래되는 경쟁시대에는 보험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보험기업은 생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회사는 경영수지의 압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험요율의 자유화에 대하여 자유요율과 규제요율을 비교해서 그 성격을 규명해봄으로써 요율자유화시대의 보험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한다.

2. 보험요율 자유화 추진내용

1980년대 중반부터 보험시장의 개방압력이 불어닥치고 90년대 초부터 금리의 자유화가 추진됨으로써 정부는 보험에 대해서도 1993년 말에 가격자유화안을 마련하여 1994년 4월부터 보험종목별로 자유화단계에 차등을 두되 1997년까지는 거의 모든 요율을 자유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거의 원안대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손해보험의 보험종목별 가격자유화추진 일정은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는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계성보험보다는 기업보험부터 실시되며 가격자유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율을 범위요율로 이행시킨 다음 자유요율의 순으로 요율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는 94년 4월부터 시작하여

손해보험 상품별 가격자유화 일정

구 분		범 위 요 율	자 유 요 율	비 고
일	화 재	주 택	'95. 4~'97. 3	'97. 4 이후
		일 반	'95. 4~'97. 3	'97. 4 이후
	선 박	500T 미만	'94. 4~'97. 3	'96. 4 이후
		500T 이상	-	-
	적 하	'95. 4~'97. 3	'96. 4 이후	
반	기술배상책임 근제		'94. 4~'96. 3	'96. 4 이후
	상 해		'95. 4~'97. 3	'97. 4 이후
	종 합	동산 종합	'94. 4~'96. 3	'96. 4 이후
		기타 종합	'95. 4~'97. 3	'97. 4 이후
	기 타 특 종		'94. 4~'96. 3	'96. 4 이후
장 기	예정사업비용		'94. 4~'96. 3	'96. 4 이후
	예정위험율 및 예정이자율		'96. 4~	'98년 이후 검토
자 동 차	할인·할증율, 특별할증		'94. 4~'96. 3	'96. 4 이후
	개별적용율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95. 4~'97. 3	'97. 4 이후
	기 본 보 험 료		'96. 4~'97. 3	'98. 4 이후

(주) 자동차보험의 자유요율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범위요율 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선박, 운송, 기술, 배상책임보험 등 중요종목에서 이미 범위요율로 이행되었고 97년부터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요율이 범위요율로부터 자유경쟁요율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인가요율과 같은 고정요율이 자유경쟁요율로 변경되면 보험경영에 어떤 과금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요율과 자유요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3. 규제요율과 자유요율의 쟁점

가. 규제요율을 주장하는 이유

자유요율보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는 요율제도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보험회사간의 보험요율경쟁을 방지해 두면 과도한 보험가격경쟁이 일어나서 보험요율이 보험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비경쟁요율이 되어

야만 보험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 다시 말하면, 보험요율은 보험사고통계에 의하여 산출되고, 수지균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검증되는 규제요율이야말로 이에 충실할 수 있는 요율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보험회사간의 보험요율의 경쟁은 보험가입자를 쓸데없는 혼란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보험료의 비교만으로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쉽게 서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약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계보험 가입자에게는 그와같은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감독당국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요율의 경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소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의 경쟁에 의하

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큰 회사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계약의 건수가 적어 회사내부에서 위험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그만큼 경영위험이 크데, 자유요율의 시행은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업에 있어서도 일반기업에 서와 마찬가지로 중소보험회사가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면에서 불리하므로 가격설정에 있어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어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보험요율의 경쟁을 인정 하게 되면 보험기업의 집중도를 높여 독점의 폐 해를 가져온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추상적인 상품인 보험상 품에 대하여는 실적통계에 충실히 맞추는 규제요 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쟁요율이어야 한다는 논리

한편, 경쟁요율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자유요율은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요율을 한계코스트 내지 그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보험경쟁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나, 이같은 현상 은 보험료 산출시에 안전할증을 붙이고 장기계약 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후 사후적인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험 회사들이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장래의 위험상황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보험약관에 보험료조정 조항을 두어 효과를 거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보험회사가 큰 회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보험만의 특유한 현상도 아니 며, 경쟁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을 양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보험요율의 자유화로 인한 중소보험회사 의 도산가능성은 보험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 한 지급능력기준의 엄격한 설정과 실제 감독의

강화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주요국의 요율자유화 현황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규제요율과 자유요율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영국과 같은 자유요율제도 가 도입되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보험회사들간에 과도한 요율경쟁으로 인 하여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및 파산지경에 이른 경우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큰 피해를 겪었 다. 이같은 경험으로 미국에서 자유요율을 버리 고 규제요율을 실시하는 주의 수가 늘어나게 되 었다.

현재 손해보험의 요율제도는 규제요율인 사전 인가제(priorapproval)와 자유요율제(open competition)로 대별되어 있으며, 그 숫자는 전자 가 30여개 주, 후자가 20여개 주이다.

다음 유럽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요율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규제요율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였다. 이 두 나 라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에, 영국의 보험요율이 저렴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파산과 합병의 빈 도는 영국이 훨씬 높았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같은 양제도간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영국, 프랑스 등 다른 EU회원국과 보조 를 맞추기 위하여 1994년에 자유요율제도로 이 행하였다.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은 손해보험요율산출 단체 법률에 의한 산정회요율과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요율로 구분되어 있다.

요율제도를 보면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종목이 산정회요율 및 보험업법상의 인 가요율제도로서 규제요율로 되어 있고, 해상 및 항공보험과 같은 일부 국제성을 띤 보험만이 자 유요율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업의 개방

화, 자유화의 압력을 받아 보험요율의 자유화계획이 1966년 4월에 공포시행된 신보험업법 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손해보험요율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정회요율과 대장성 장관의 인가요율에 대하여 가계성보험과 기업보험 및 국제성보험분야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의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지진보험과 같은 사회정책적 보험에 대해서는 계속 보험요율을 통일하여 경쟁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보험요율의 자유화방향은 매우 보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자유화 계획과 비교해볼 때 상위한 점은 우리가 요율자유화를 97년까지 단계별로 자유화 하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단계별 자유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유화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그치고 자유화 대상종목과 비자유화 보험종목을 구분하여 자유화 할 것을 하고, 안할 것은 안하겠다는 데에 양국간의 차이가 있다.

5. 요율 자유화에 대응하는 자세

우리의 관심사는 보험요율이 규제되어 경쟁을 배제하는 상태로 있었던 과거의 보험요율제도가 경쟁을 촉진하는 자유경쟁요율로 이행되게 되면 그것이 보험기업경영의 양상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요율하에서 보다 자유경쟁요율 밑에서 보험기업의 지급능력이나 과산 등의 확률이 높다는 견해는 규제요율일 때의 카르텔(협정·인가요율)이 철폐됨으로써 생기는 요율경쟁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이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결과가 최근 미국의 A. M. Best사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1969~1990년간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의 도산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기간(21년)에 302개의 보험회사가 파산하였는데 그중 28%에 해당하는 86개사가 부적절하게 보험요율을 설정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곧 손해보험회사의 첫째가는 과국원인이 부당한 요율경쟁이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다른 조사기관인 「앤더슨」사는 보험회사의 가장 큰 수익성 저하원인으로서 보험요율의 경쟁을 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장기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자유경쟁요율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전의 규제요율하에서 보다 보험료의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보험사업의 수지를 압박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요율의 인상이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왔던 자동차보험에서는 반대로 자유요율의 시행으로 보험사업의 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맺는 말

자유요율이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과도한 요율경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파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요율 제도하에서는 요율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무모한 요율인하 경쟁을 삼가야 한다. 경험 통계에 대해서는 각사의 경험데이터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보험개발원의 통계와 요율검정결과를 중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영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부터 보험경영의 성패는 각사의 보험요율설정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